

제조물 책임이란 무엇인가?

1. 의의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 판매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즉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있는 제조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구제하여 주는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책임인 것이다.

▶ 제조물책임법은 피해자의 입증책임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제조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을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으로 변경(소비자 피해구제 목적)

2. 제조물책임의 법적구성

제조물책임의 법적구성요소를 과실의 존재,

계약관계의 존재, 결합 및 피해의 존재, 인과관계의 존재 등 피해자의 입증책임사항과 제조업자, 판매업자, 부품공급업자 등 피해자가 소추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3. 제품결합의 개념

제조물책임에 있어 책임기준으로 새롭게 대두한 개념이 제조물의 결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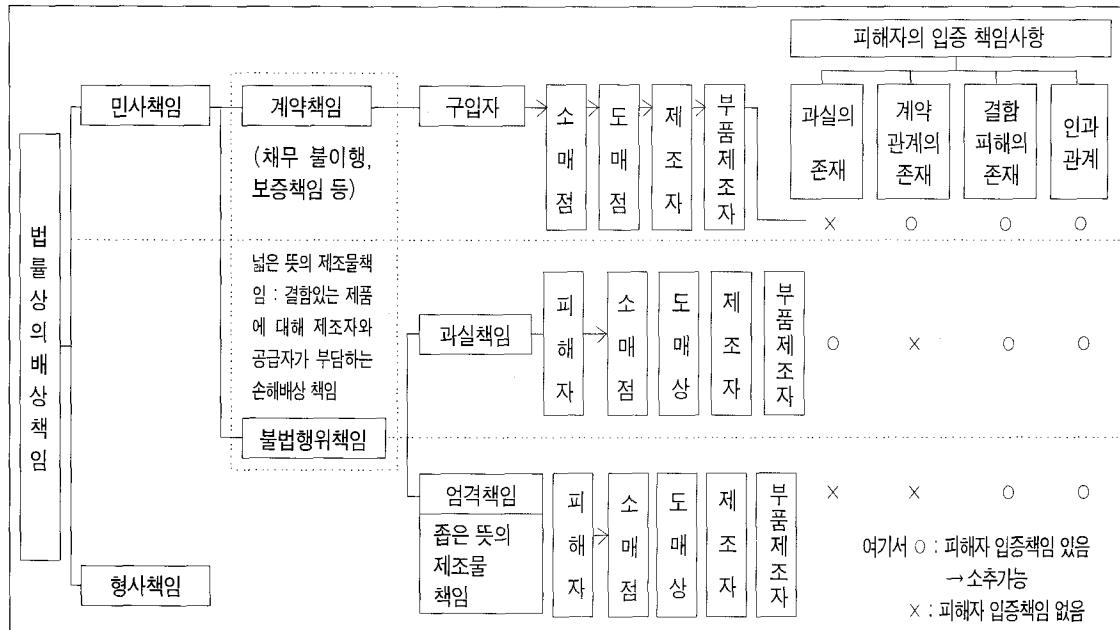
현행민법(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인 과실책임에서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행위에 과실이 존재하는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책임요건이다.

이에 대하여 엄격책임(무과실책임)으로서의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에 '결합'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되므로 '결합'이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핵심적인 책임요건이라 할 수 있다.

[표 1] 현행민법과 제조물책임법 비교

현행민법(민법 750)	제조물책임법	비 고
1)加害자의 고의, 과실	1) 제조물의 결합존재	1), 2), 3)의 입증책임은
2) 손해의 발생	2) 손해의 발생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3) 손해와 고의, 과실의 인과관계	3) 손해와 결합의 인과관계	

[그림 1] 제조물책임의 법적 구성



일반적으로 결함이란 상품에 있어 상당한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를 말하며, 제조물의 통상예견된 사용에 있어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부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결국, 상품의 결함여부의 판단은 ‘안전성 결여’ 여부에 의해 판단되며 ‘안전성 결여’ 판단은 일반적으로 그 상품의 평균적 소비자를 표준으로 하고 소비자의 기대의 내용과 정도, 현재의 과학기술수준, 지시, 경고의 방법, 위험성의 정도와 개연성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 판단에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출하시기 등이 고려될 것이다.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의 기대가 높아지면 결함의 기준도 변할 것이다.

3-1. 결함과 하자의 구분

제조물책임에서 결함(detect, Fehler)은 민법 580조와 581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flaw, Mamgel)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제조물의 흠을 제조물의 사용가치, 제품의 상품성에 대한 것과 제조물의 안전성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전자의 흠은 제조물의 성질이나 품질이 표준이하인 것을 말하며, 후자는 제조물에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하자는 거래상 또는 사회통념상 갖추어야 할 품질(상품성)이 결여된 상태이고, 결함은 그 하자가 원인이 되어 새로운 손해나 위험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고 볼으로써 하자는 상품성의 결여이고, 결함은 제품의 안전성의 결여라 하여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3-2. 결함의 정의에 관한 입법례

3-2-1. 미국 제 2차 불법행위법

제조물의 이용자, 소비자, 또는 그의 재산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

3-2-2. 영국 소비자보호법(독일 제조물책임법)

일반적으로 기대되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

3-2-3. 일본제조물책임법

당해 제조물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일반적인 제조물의 안전성을 결여하는 경우

3-2-4. 유럽공동체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람이 당연히 기대하는 안전성을 결여하는 경우

3-2-5. 우리의 제조물책임법(안)

당해 제조물에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4. 결함의 종류

위에서 정의한 결함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4-1. 설계(구조)상의 결함(Design Defect)

생산물의 외형적인 형태, 품질 및 구조에 대한 일체의 결함으로써 상품의 안전성, 효율성, 매력성 및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제조자의 계획 또는 의식적 선택의 결과로 발생한다.

▲안전설계불량

▲안전장치 미비

▲기술수준 불합격

4-2. 제조상의 결함

제조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제품이 제조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제조된 것으로 말하며 이러한 결함은 제품의 제조, 관리단계에서의 인적, 기술적 부주의에 기인한다.

▲품질관리 부실

▲안전장치 고장

▲조립상태의 검사불량

▲원재료, 부품불량

4-3. 지시상(경고, 표시상)의 결함

생산물의 제조자는 그 물건의 사용방법을 지시하고 그 물건의 사용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시 및 경고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경우 이를 지시 또는 경고상의 결함이라 한다.

▲취급설명서 미비

▲경고사항 미비(부적절)

▲팜플렛, 광고, 판매원의 설명 미비

▲표시불량(과대, 사기)

4-4. 유통과정상의 결함

제조자의 제작출고시점에서는 결함이 없던 제품이 유통과정상의 잘못으로 소비자에게 인도시에 제품의 결함이 있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품의 보관자, 판매자 등 유통과정상 결함을 야기한 자가 제조물 책임을 진다.

4-5. 관찰의무(판매 후의 위험에고 의무)의 위반

제조자는 유통시킨 제품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유통 후에도 계속하여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그 결함있는 제조물을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5. RECALL제도란 무엇인가.

RECALL제도란 생산자가 제조, 판매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제 3자인 소비자가 신체장애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해당제품의 회수, 검사 등을 생산자가 배상하는 제도이다. 제품의 결함이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로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이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와 제조업체 자신의 비용손해로 구분할 수 있다.

5-1.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

- 1)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소비자 등 제 3자의 신체장애(Bodily Injury)
- 2)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소비자 등 제 3자의 재물손해(Property Damage)

5-2. 제조업자의 자체손실

- 1) 제 3자에게 양도된 후 사고가 발생한 결함제품의 수리 또는 대체비용
- 2) 결함제품의 검사, 회수비용

6. 제조물 책임(PL)의 법리

6-1. 의의

PL이란 물건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가 그 물건의 결함으로 인하여 구입자 또는 이용자 등에

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말하며, 이는 크게 과실책임, 보증불이행 및 엄격배상책임의 3가지를 그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6-2. 과실책임(Negligence Liability)

제조업자, 판매업자에 부과된 제반의무에 관한 부주의, 태만 등에 근거한 책임

- ▲설계상의 과실
- ▲취급설명서, 지시서, 경고문상 과실
- ▲조립상의 과실
- ▲검사 및 시험상의 과실

6-3. 보증(Warranty Liability)책임

제조업자, 판매업자의 생산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표시에 기인한 책임

6-3-1. 명시적 보증책임

제품에 관련된 사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표시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이다.

- ▲확인, 약속, 표기, 견본, 모형, 광고행위, 상표

6-3-2. 묵시적 보증책임

제품이 상품성이 있고 의도된 특정용도에 적합하다고 믿는 사실 및 거래의 관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책임이다.

6-4. 엄격배상책임(Strict Liability)

엄격배상책임이란 피해자인 소비자가 가해자인 제조, 판매업자 측의 과실 또는 보증책임 불이행을 검증할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법리로써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제조, 판매업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제도이다. [ko]